

제 456 호

1974.8.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 조 례	
제 868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 3
제 869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4
제 870호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입학비정수수료징수조례..... 4
◎ 규 칙	
제 1384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광고업무규칙..... 5
제 1385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현업기관설치규칙..... 14
◎ 고 시	
제 103호	도시계획시설 (소로) 결정및 지적승인..... 33
제 104호	• (도시고속철도) 지적승인..... 37
제 105호	• (도로) 지적승인..... 38
제 106호	• (소로) 결정및 지적승인..... 38
제 107호	• (도시고속철도) 사업실시 계획인가..... 40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147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 운용요강중 개정공고.....	41
	제 148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산업화, 전문제열화, 기업합병및 시설근대화지원자금 집행요령중 개정공고.....	41
	제 149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정및 지정취소공고.....	42
	제 150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대체 지정및 변경공고.....	44
	제 151호	미수검중기검사최고및등록취소(예교)공고.....	44
	제 153호	주택개량육위한 서빙고제 1, 고척, 북아현제 2구역 및아현제 2구역 1차환지계획공람공고.....	45
	제 155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45
◎	사	명.....	46

조 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7.2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 결 영

● 서울특별시조례 제 868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

제정 66.1.28.조례 제 420 호

개정 74.7.26.조례 제 868 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 2 항중 "별지도표 제 1 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 2 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수입증지는 교육감이 발
행하되 그 종류는 다음의 5 종으
로 한다.

- 1. 10 원
- 2. 50 원
- 3. 100 원
- 4. 300 원
- 5. 50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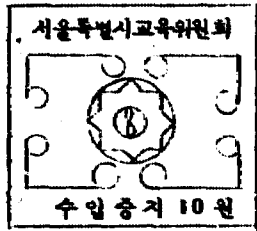
제 11 조 제 5 항중 "5원미만"을
"10원미만"으로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발
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와 병용한다.

도표제 1 호



22 ■

19 ■

규격과 모양은 동일하고 종류는 하
지와 같이 색깔로서 구분하여 종류표
시는 해당 직면가를 붙인다.

10 원 : 갈색, 50 원 : 녹색, 100 원 :
남색, 500 원 : 자색, 300 원 : 주황색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7. 3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교육감 하 결 영

◎서울특별시조례제 869 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제정 1952.6.30. 조례제 15호
10차개정 1974.7.31. 조례제 869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중 "5인용
1실1회 100원"을 "3인용 1실
1일 300원"으로, "10인용 1실
1회 200원"을 "5인용 1실1일
500원"으로 한다.

제1조 제2항중 "30회"를 "1개
월"로 "선납하여야 한다"를 "1
개월을 단위로 선납하되 도서관
휴관일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로 한다.

제1조 제3항중 "전제1항 제2
호 및 제2항에서 1회라 함은"
을 "전제1항에서 1회 또는 1일
이라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중,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징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74. 7. 3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감 하 점 생

◎서울특별시조례제 870 호

서울특별시 중, 고등학교 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74.7.31. 조례제 87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학교 또
는 고등학교에 입학배정원서를 제출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학교 배정
수수료(이하 "배정수수료"라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한도액) 배정수수료는 다
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정한 한도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징수방법) ①배정수수료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배정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 다만, 고등
학교에 지원하고자 입학선발고사료를
납입한자는 1회에 한하여 배정수수
료를 면제한다.

②일단 납입된 배정수수료는 과오납
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조례제 639 호 서울특별시중학교 입학비정수수로 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별표

구 분	징 수 한 도 액	비 고
고 등 학 교	300 원	
중 학 교	300 원	

규 칙

서울특별시지하철광고업무취급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197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규칙제 138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광고업무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지하철(이하 지하철이라 한다)의 시설물에 부착 또는 첩부하는 광고물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미화의 조성과 광고취급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하철의 광고취

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라 함은 지하철의 시설물 및 차량에 게시하여 영입 또는 상품을 선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광고료"라 함은 광고게첨을 위하여 지하철의 시설물 및 차량을 이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말한다.
3. "게첨인"이라 함은 광고주 및 광고대행취급인을 총칭한다.

제4조(게첨장소) 광고물은 지하철 차량,역 및 그 부대시설 기타 용지내의 지정 장소 또는 업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한하여 이를 게시한다.

제 5 조 (게재 금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할 수 없다.

1. 관계법규에 위반될 때
2.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때.
3. 여객 또는 공중에게 불쾌감을 줄 때
4.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지하철의 업무상 광고의 게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6 조 (광고의 종류) 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통광고
 - 가. 역구내건기조명정형광고
 - 나. 역구내건기조명특정광고
 - 다. 역 포스트 광고
 - 라. 차내액자광고 (A형, B형)
2. 특수광고
 - 가. 천연탄광고
 - 나. 벤취광고
 - 다. 승차위치광고
 - 라. 출입문안내광고
 - 마. 진열장광고
 - 바. 기타잡종광고

제 7 조 (광고의 규격) ①광고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종 별	종 류	규 격
보 통 광 고	역구내건기조명정형광고	100 cm × 150 cm
보 통 광 고	역구내건기조명특정광고	따로 정함 .
보 통 광 고	역 포 스톱 광 고	80 cm × 110 cm
보 통 광 고	차 내 액 자 광 고	A형 52 cm × 37 cm B형 50 cm × 26 cm
특 수 광 고	시 설 물 이 용 광 고 시 설 물 지 중 광 고 잡 종 광 고	따 로 정 함

<p>㉔천장 이외의 광고의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의 면적은 대우리를 포함한 면적이 1/4㎡를 저초 산정 단위로 한다. 2. 1/4㎡ 미만은 이를 1/4㎡로 하여 계산한다. 3. 방형이 아닌것은 이를 포용하는 최소방형(最少方形)의 면적 	<p>에 의한다.</p> <p>제 8 조(계첨기간) 광고의 계첨기간은 광고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첨취급의 경우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p>
---	---

종 류		기 간
보 통 광 고	역구내전기조명장형광고	6 개 월
	역구내전기조명특정광고	6 개 월
	역포스트트광고	1 개 월
	역내액자광고	1 개 월
복 수 광 고		2 개 월

<p>제 9 조(계첨기간의 계산) 광고계첨기간의 계산은 계첨일로 부터 계산하여 1개월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p> <p>제 10 조(기간의 계첨) 계첨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p>	<p>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광고를 계첨하지 아니한 일수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연장 계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첨불가능 사유가 계첨인의 귀책사유에 인하지 아니할때.
--	--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광고의 기점이 일시 불가능하게 되었을때.

3. 전 각호이외에 시장이 특히 인정할때

제 11 조 (광고대행취급인의 지정)

①시장은 광고의 제작 및 기점업무를 광고대행 취급인(이하 "취급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취급인의 지정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내에 본사 또는 영업의 근거를 둔자.
2. 광고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1년이상 취급실적이 있는자.
3. 자격과 신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12 조 (취급인의 업무) 취급인이

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주의 유치 및 허가절차

2. 광고의 도안 및 설계

3. 광고의 제작 기점 및 철거

4. 건등의 설비

5. 광고료의 납부

6. 광고물 단속법등 관계규정에 의한 필요 절차

제 13 조 (보증금의 예치) ①취급인

은 계약광고료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광고의 종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광고주에 대하여도 건항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증당할 수 있다.

1. 광고료의 체납액 및 연체료
2. 대집행 비용
3. 손해배상

제 14 조 (기점허가) ①광고물을 기

점하고자 할때에는 기점인을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신청서를 구비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시장은
계청인에게 별지서식 제 2호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계청기간중 광고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기간만료후에도 계속하여 계
청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변경이
없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5 조 (경합되는 광고의 승인) 동
일 장소에 2 이상의 광고계청 신청인
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택일한다.

1. 신청순위
2. 광고의 내용
3. 지하철입부와 관련되는 유익성
4. 의장 및 도안
5. 광고계청의 실적
6. 기 타

제 16 조 (거청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경

고계청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사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았음이 판명될때
2. 이 규칙에 의하여 발하는 지
시 또는 명령을 위반할때
3.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광고료(
보증금)를 납부하지 아니할때
4.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계청할때
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때

제 17 조 (광고료의 산정) ①광고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대행취급의 경우에는 계약요
금에 의한다.

②역구내 전기조명광고는 계청장소
에 따라 역동급과 위치동급을 구
분하여 광고료를 달리 산정하며 동
급구분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8 조 (광고료의 납부) 모든 광고
료는 반드시 선납하되 그 납부일자

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1. 대행취급계약에 의하여 결정된 광고료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납부한다.

2. 기타 광고료는 광고계침 3일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19 조 (광고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것일때

2. 지하철의 여객유치, 안내등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게재할때

3. 시설물을 기증하고 그 시설물에 기증인을 표시할때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제 20 조 (광고료계산시의 단수처리)

·광고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1원으로 한다.

제 21 조 (일괄계산) 광고계침기간을

일괄계산할 때에는 1개월 30일로 한다.

제 22 조 (광고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 17 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계침의 취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였을때

2. 계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계침중의 광고물이 게재불가능하게 되었을때

3. 기타 특히 반환사유가 있다고 인정될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료의 반환은 광고계침전일 때에는 이미 징수한 광고료의 전액으로 하고 게재후 일 때에는 이미 징수한 광고료에서 게재기간에 대하여 일괄 계산한 요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제 23 조 (광고료의 불반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받은 광고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 17 조 제 1호 내지 제 4호에 해당하여 게재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한때

2. 계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광고의 게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철회한때

제 25 조 (광고물파손 등에 관한 책임)

①시장은 제철중에 발생한 광고물 파손의 손실 또는 멸실 등에 의한 제철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속직원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광고물에 의하여 지하철 또는 제 3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철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가 실효된 경우에 광고물의 철거 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된 광고물에 대하여는 시장이 임의처리하고 보편책임을 지지아니 한다.

제 26 조 (광고물의 철거) ①광고물

의 제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철허가가 취소 또는 철거된 때에는 제철인은 지체없이 당해 광고물을 철거한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권한의 경우 제철인이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적정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철거비용은 제철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 27 조 (연체료) 광고료는 제 19 조 의 규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일부터 기 산하여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년 17 건의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료가 1,000 원미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 (업무경사) 시장은 광고업무 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취 급인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라도 지시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업무취급상황을 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9 조 (권한의 위임) 이 규칙에 정하여진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하철본 부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인의 지정요건 결정
2. 제 18 조제 1 항의 본문규정에 의한 광고료의 결정

부 칙

이규칙은 197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광고·게첨 허가 신청서

상호 :

대표자성명 :

귀 지하철의 광고·게첨시설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명	등급	게첨장소	광고물		수량	게첨기간	요금
			종별	형식·노선·규격			

197

신청인 (대행취급자)

㉑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장 귀하

1. 구비서류 (1) 사 양 서
 (2) 허가서 (관할 경찰서 등 필요한 경우)
2. 주 의 (1) ※부분은 게첨 신청인이 기입할것
 (2) 형식 또는 규격난에는 정형 또는 형식만 기입할것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현업기관설치
규칙을 이에 공고한다.

1974. 7. 31.

서울특별시 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385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본부
현업기관설치규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
시지하철본부(이하 지하철본부라
한다) 설치조례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본부에 설치하는 현
업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직무) 기관별 문장사무는
별표제 1 호와 같다.

제 3 조 (명칭 과 위치) 기관의 명칭

과 위치는 별표제 1 호와 같다.

제 4 조 (기관장) ①기관에 기관장

각 1 인을 두며 그 직명은 별표
제 1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기관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기관의 업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 조 (공무원) 기관에 기관장의예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사무분장은
별표제 2 호와 같다.

제 6 조 (정원) 기관의 직명별 정원

은 별표제 3 호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별표제 3호 서울특별시 지하철본부현업부서정원표

구분 관급 직종별 기관별	일 반 계																				
	4				4				5				5								
	지 방 행 정 주 사	지 방 기 계 기 사	지 방 전 기 기 사	지 방 토 목 기 사	지 방 전 숙 기 사	지 방 공 신 기 사	소 계	지 방 행 정 주 사	지 방 기 계 기 사	지 방 전 기 기 사	지 방 토 목 기 사	지 방 전 숙 기 사	지 방 공 신 기 사	소 계	지 방 행 정 서 기	지 방 기 계 기 원	지 방 전 기 기 원	지 방 토 목 기 원	지 방 전 숙 기 원	지 방 공 신 기 원	소 계
합 계	10	3	8	2		4	27	4		3	1			8	2	3					5
경리과	참 고	1					1	1						1	1						1
은수과	서울역 앞	1					1														
	시 청 앞	1					1														
	중 과	1					1														
	중로3 가	1					1														
	중로5 가	1					1														
	동 대 문	1					1														
	신 선 동	1					1														
	제 기 동	1					1														
	청 량 리	1					1														
문권사명실		1				1															
승무원리소		1				1	1						1								
소 계	9	2				11	1						1								
공무과	공 무 소			2		2			1				1	1							1
전차과	차량공과소	1				1	1						1								
전기과	전력사명실			3		3			3				3			3					3
	전 기 소			1		1	1						1								
	신호보안소			4		4	4														
	통 신 소					4	4														
소 계			8		4	12	1		3			4			3					3	

구분		일 반 직											
직종별	기관별	5					일 반 직						
		지방행정서기보	지방기계기원보	지방전기기원보	지방토목기원보	지방건축기원보	소계	행정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총계
합계							16	3	14	3		4	40
경리과							3						3
운수과	서울역 앞						1						1
	시청 앞						1						1
	종각						1						1
	종로 3가						1						1
	종로 5가						1						1
	동대문						1						1
	신설동						1						1
	계기동						1						1
	청량리						1						1
운전사령실							1					1	
승무원의소						1	1					2	
소계							10	2					12
공무과	공무소						1			3			4
전차과	차량공작소						1	1					2
전기과	전력사령실									9			9
	전기소						1			1			2
	신호보안소									4			4
	통신소											4	4
소계							1		14			4	19

기 능 적																	
6							7										
운	운	전	통	신	전	기	선	소	운	운	전	통	신	전	기	선	소
수	전	기	신	호	수	공	로	계	수	전	기	신	호	수	공	로	계
9	25	5	3	3	3	1	2	51	72	24	5	3	3	3	4	2	116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1								1	8								8
6								4									
19								19	24								24
9	25							34	72	24							96
							2	2							1	2	3
					3	1		4						3	3		6
		5						5			5						5
				3				3					3				3
			3					3				3					3
		5	3	3				11			5	3	3				11

구분 급류및등급별 직종별 기관별		기능직																				
		8								9												
		운	운	전	통	신	전	기	선	창	소	운	운	전	통	신	전	기	선	영	창	소
수	전	기	신	호	수	공	토	원	계	수	전	기	신	호	수	공	토	선	원	계		
합 계		149	22	5	6	6	12	6	6	1	213	129	11	7	3	6	6	4	7	3	5	83
경리과	창 고																				3	3
운수과	서울역앞	19									19	19										19
	시청앞	15									15	27										27
	종자	17									17	15										15
	종로3가	15									15	13										13
	종로5가	15									15	5										5
	동대문	15									15	13										13
	신설동	19									19	21										21
	제기동	15									15	3										3
	청량리	19									19	13										13
	운전사명실																					
승무원리소		22								22	11											11
소 계		149	22								171	129	11									140
공무과	공무소							2	6		8							2	7	3		12
취차과	차량공작소					12	4		1	17					8					2		10
전기과	전력사명실			1							1											
	전기소			4							4		7					2				9
	신호보안서					6					6			6								6
	통신소				6						6			3								3
소 계				5	6	6					17		7	3	6			2				18

기 능 적																				
10								11				13		기 능 적 계						
운	문	전	통	신	전	기	선	소	전	전	선	소	전	소	운	문	전	통	신	전
수	전	기	신	호	수	공	토	계	기	수	로	계	기	계	수	전	기	신	호	수
42		10		3	5	4	9	73	3	5	2	10			401	82	35	15	21	36
5								5							52					
5								5							56					
5								5							46					
5								5							42					
5								5							34					
5								5							42					
4								4							53					
4								4							31					
4								4							45					
															6					
															76					
42								42							401	82				
						1	9	10			2	2								
				5				5		5		5								36
		10				3		13	3			3					1			
				3				3									34			21
																			15	
		10		3		3		16	3			3					35	15	21	

구분 급류및등급별 직종별 기관별	기능직					고용원										합
	기능직계					고용원계										
	기	선	영	창	소	운	전	경	통	선	정	연	보	소	합	
공	보	선	원	계	원	공	원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합계	19	28	3	6	646	2	6	21	2	2	33	38	2	106	792	
경리과	창	고		3	3			9						9	15	
운수과	서울역앞				52							5		5	58	
	시청앞				56							5		5	62	
	종각				46							3		3	50	
	종로3가				42							3		3	46	
	종로5가				34							3		3	38	
	동대문				42							3		3	46	
	신설동				53							6		6	60	
	계기동				31							4		4	36	
	청량리				45							6		6	52	
	운전사명실				6										7	
승무원리소				76										78		
소계				483							38		38	533		
공무과	공무소	6	28	3	37					2				2	43	
전차과	차량공작소	8			3	47		12			33			45	94	
전기과	전력사명실				1										10	
	전기소	5			39	2	6							8	49	
	신호보안소				21							2	2	2	27	
	통신소				15				2					2	21	
소계	5				76	2	6		2			2	12	107		

별표제 1호

현업기관설치표

기관명칭	위치	기관장		기관별분장사무
		명칭	직명	
서울특별시지하철 계기동자재창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계기동 892의 70	관리장	지방행정주사또는 지방행정주사보	지하철사업용 자재 의출납, 보관및관리
서울특별시지하철 영등포자재창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영 등포동 28-3	관리장	지방행정주사또는 지방행정주사보	지하철사업용 자재 의출납, 보관및관리
서울특별시서울역 알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서울역 광장지하	역 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철 도원 6 등급	역객의취급, 수입금 관리, 열차의착발취 급및역사의관리 거 타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시청앞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중구대한문 세신부앞간 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종각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1가 44 ~종로 2가의 5 간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종로3 가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3가 92 ~종로 3가 69 간 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종로5 가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가 124의 8 ~종로 5가 51 간지하.	역 장	"	"
서울특별시동대문 지하철역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6가 78의 25 ~동대 문구창신동 5동 2 간지 하	역 장	"	"

기관명칭	위치	기관장		기관별분장사무
		명칭	직명	
서울특별시신설동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85 의 24 ~신 설동 89 의 57 간지하	역장	지방행정주사또 는 지방철도원 6 등급	여객의취급, 수입 금관리, 열차의 착발취급및역사의 관리,기타필요한사항
서울특별시제기동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제기동 51 앞~제기동 36 의 12 간앞	역장	.	.
서울특별시청량리 지하철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건농동 620 의 69 ~대 왕상가앞광장지하	역장	.	.
서울특별시지하철 운전사령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 로 5 가지하철역사내	사령장	지방기계기과, 지방기계기사 또는 지방철도 원 6 등급	열차및차량의운전 정리, 운전사고의 부구처리및여객의 수송에관한지시
서울특별시지하철 승무관리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97 의 2 앞차고	소장	.	여객의수송관리및 전차운전에관한사항
서울특별시지하철 공무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97 의 75 앞 지하	소장	지방토목기과 또는 지방토목 기사	선로및건조물의 관리, 개량 및 보수
서울특별시지하철 차량공작소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신설동 97 의 75 앞 지하	소장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기계 기사	전차의검사,수리및 청소기타전차의유 지관리에관한사항
서울특별시지하철 전력사령실	서울특별시종로구중 로 5 가지하철역사내	사령장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사	전력운공에관한지 명및연락무인변전 소의 운전 및

기관명칭	위치	기관장		기관별분장사무
		명칭	직명	
서울특별시지하철 전거소	서울특별시중로구중 로 5가 역사내	소장	지방전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사	감시, 전력량집계와 각종경보의 전달, 전 력계통운용에 관한 기록 집계 및 작성, 기타 부수 업무
서울특별시지하철 신호보안소	서울특별시중로구중 로 5가역사내	소장	지방전기과 또는 지방전기 기사	송배전, 전차선, 역 사전기, 변전설비 및 원격설비 기 타 지하철용 전 기기재 및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신호보안소 설비 의 유지관리 및 보수 기타 신호 보안 사명업무
서울특별시지하철 통신소	서울특별시중로구중 로 5가역사내	소장	지방전기과 또는 지방통신 기사	통신설비의 유지 관리 및 보수 기타 통신 사명 업무

별표제 2호

현업기관직원별사무분장표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서울특별시 지하철제기동 자재창고의 1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서 기	관리장을 보좌하며 자재의 수급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창고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관리장의 명을 받아 창고내 원품 의 출납업무를 담당한다.
	경비원	고용원	관리장의 명을 받아 창고의 경리업 무를 담당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역 앞 지하철역의 8역	조역	지방철도원	역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역장을 보 좌하며 역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서무, 수입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불, 계급어 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지도 역무원	지방철도원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청구, 수입금관리, 창표류의 정리보고, 기타 역무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조역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내원	지방철도원	역장의 명을 받아 차량의 입환작 업, 신호기 및 건철기의 취급과 정 비, 입·출고 차량의 유도 및 열차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역무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시발, 중차후의 구내점검 기타 부대 업무를 처리한다. 역장의 명을 받아 승차권류의 발매, 개찰 및 집찰, 여객의 유도 및 안내, 여객운임의정산, 기타 부대업무를 처리 한다. 특히 기차발발할 때에는 신호기 및 전철기의 취급에 종사할 수 있다. 역장의 명을 받아 역무원의 보조업 무와 역구내의 정리 및 경비업무 기타 잡무에 종사하며 특히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역무원의 직무에 종 사할 수 있다.
	여객수	고용원	
서울특별시 지하철 운전사령실	운전사령 주입	지방철도원	운전사령업무 전반에 관하여 사령실 장을 보좌하며 사령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전사령 원	지방철도원	열차의 운전전리, 운전사고 복구, 임 시열차운행 등 차량운용업무 및 여 객운송에 관한 지시업무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무원의소	선입지도 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내 직원에 대하여 실기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전차 운전 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소장 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 서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 서무, 수입 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발, 재고 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서류를 처리한다.
	지도차장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차장업무의 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과 필요한 경우에는 차내 검찰업무에 종사한다.
	지도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운전기사의 실기 지도, 기술 및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승무감독 업무에 종사한다.
	운용원	지방철도원	승무원의 근무표 작성 및 승무시간의 규정, 운수통제, 기타 운전업무를 보조한다.
	운전기사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열차 및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다만, 열차가 역외에 있을 때에는 차장, 열차가 역에 있을 때에는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차장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의 명을 받아 열차에 승무하여 열차의 운전과 다른 업무, 여객취급, 차내 질서유치 기타 열차내 계반업무에 종사하며 필요에 따라 역에서 열차 또는 차량의 입환 작업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공무소	보선조역	지방철도원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사무원	지방행정서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사무, 수입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출, 계약서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영선원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건축시설의 보수에 종사한다.
	기술원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공무소의 기술업무에 종사하며 소장 및 조역이 유고시에는 선로반장, 기공원 및 조기원을 지휘 감독한다.
	선로반장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선로 시설의 보수(保守)수리 및 용지관리업무에 종사하며 선로원 및 선로수를 지휘 감독한다.
	기공원	지방철도원 및 지방철도수	소장의 명을 맡아 보선, 기계기구의 수선, 용접, 단아(鍛冶)작업, 조각 및 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조기원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맡아 모-터카, 비상용 자동차, 타이펠러, 기타 소거계류의 운전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선로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 및 선로반장의 지시를 맡아 선로시설의 보수, 수리 및 용지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서울특별시 지하철 차량공작소	신로수	고용원	소장 및 신로반장의 지시를 받아 신로원의 직무를 보좌한다.
	검수조역	지방철도원	소장을 보좌하여 차량검사업무에 종사하며 검수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공조역	지방철도원	소장을 보좌하여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재생 제작하고 소내 운반차 등의 취급, 정비 업무에 종사하며 기공원을 지휘 감독하고 소장 및 검수조역이 모두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서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서무, 수입금관리, 문쪽의 관리 및 수발, 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기술원	지방철도원	소장 및 기공조역의 지시를 받아 전차검사 및 분해, 통계보고, 기타 제반 기술 업무에 종사한다.
	검수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소장 및 검수조역의 지시를 받아 전차의 정기 및 수시검사를 시행하며 차량보전 업무 및 사고 복구 업무에 종사한다.

기관명	공 무 원		분 장 사 부
	종 류	직 명	
	기 공원	지 방 철 도 원	소장 및 기공조역의 지시를 받아 검수에 필요한 부품을 제생 제작하고 입환차, 밧메리키, 거동기 및 사고복구차 등의 장비에 대한 취급 및 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창 고원	지 방 철 도 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창고에 보관된 검수용 부품관리 업무에 종사한다.
	정 리 수 고 용 원	용 원	소장 및 검수조역의 지시를 받아 차량에 대한 청소, 소내 각종 정리 업무에 종사하며 특히 지시가 있을 때에는 검수원을 보조한다.
	경 비 수 고 용 원	용 원	소장의 명을 받아 차량 및 시설물 전반에 걸친 경비 업무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 하 철 전 력 사령실	전 력 사령 주 입	지 방 전기 기사 또는 지방전기 기사보	사령장을 보좌하여 전력운용에 대한 지령 및 연락과 무인변전소의 운전 및 감시업무에 종사하며 사령장 유고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 력 사령 원	지 방 전기 기사보, 지 방 전기 기원보 또는 지방철도원	전력량의 집계, 변전소의 기록 집계 및 각종 경보의 전달. 기타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기록 집계 업무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 하 철 전기 소	전기조역	지 방 철 도 원	소장을 보좌하여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계획 및 작업의 지휘 감독 업무에 종사하며 소장 유고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사무원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행정서 기	소장의 명을 받아 소내서부, 수입금 관리, 물품의 관리 및 수발, 지급여외 청구 및 지급, 기타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전기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전기시설의 유지, 보수 및 순회점검 과 예방정비 업무에 종사한다.
	조기원	지방철도원	모-터카 운전 및 보수 업무에 종 사한다.
	전공고용원		전기원의 직무를 보좌한다.
	운전원고용원		전기시설 보수용 차량운전 및 보수 에 종사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 신호보안소	신호보안 사령주임	지방전기기사	소장을 보좌하여 운전보안설비 운영 의 감시, 장애 및 사고시의 응급조 치, 장애 및 사고 복구후의 시험 확인, 보수 작업과 열차 운전의 영 향을 미치는 검사 및 작업의 통계 사명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각종 보고와 관계기관과의 연 락업무에 종사하며 소장 유고시 선 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신호보안 조역	신호보안 조역	지방철도원	신호보안 설비의 보수 유지 관리 계획 작성과 보수 자재의 처리, 보수작업의 지휘 감독 및 확인, 도포류경비, 현업 종사원에 대한 교육 계획 및 시행업무에 종사한다.
	신호보안 사령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보수작업 및 검사시의 수속 및 통제, 사령업무, 보고 및 통보전달, 신호장애, 사고발생 및 회복시의 조치 설비의 사용 불능시의 조치, 중앙장치 점검 및 보수업무에 종사한다.
	신호 보안원	지방철도원 또는 지방철도수	신호설비의 유지보수, 순회점검 및 예방 정비업무에 종사한다.
	조기원	지방철도수	모-터카 운전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한다.
	보안수 교용원		신호보안원의 직무를 보조한다.
서울특별시 지하철통신소	통신사령 주임	지방통신기사	소장을 보좌하여 점검 제어되는 통신소 설비의 조작 및 상태 감시 설비 사고시의 필요한 제어 및 수배업무에 종사하며, 소장 유고시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관명	공무원		분장사무
	종류	직명	
	통신조역	지방철도원	소장의 명을 받아 현업직원의 훈련 계획수립 및 시행, 통신검사 및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신검사의 분석처리 및 보고서 작성, 자재의 준비 및 수급 도표류의 작성 및 정비 기타 작업 안전 측정업무에 종사한다.
	통신사명원	지방철도수	통신회선의 기능 시험 및 긴급 회선 구성, 사령실내의 통신설비 업무에 종사한다.
	통신원	지방철도원	통신설비의 검사, 유지 및 보수작업, 사고시의 응급 복구작업, 통신검사의 분석처리 및 보고서 작성, 자료의 준비 및 수급, 도표류의 작성 및 정리 기타 작업안전 측정 업무에 종사한다.
	통신수고용원	고용원	통신원의 직무풀 보조한다.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3 호

도시계획시설(소토)결정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구역중 창동 및도봉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같이 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

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7. 26

서울특별시 장

가.지 구 조 서

구 지 구 명	동 명	비 고
창동및도봉지구	창동, 도봉동, 쌍문동, 방학동각 1부	

1. 서울도시계획도로 확정조서별첨
 2. " " 확정도면별첨
- 별첨: 도면표시와갈음(도면양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에 보관함

로 선 조 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소로	1	1	10 m	280m	도봉동	327	도봉동 333-2
	"	2	2	8 m	110	"	1-1	" 1-6
	"	"	3	"	118	"	5-1	" 8
	"	"	4	"	126	"	20	" 37
	"	"	5	"	109	"	36-1	" 41
	"	"	6	"	98	"	22-3	" 23
	"	"	10	"	90	"	77-1	" 74-5

구분	등급	류번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소로	2	14	8m	70m	도봉동	78-10	도봉동	80-7			
			15		334		82-4		61			
			17		254		341-5		삼 6-1			
			18		200		341-6		286-1			
			19		236		방학동산 53-1		방학동 304-1			
			20		130		304-3		305			
			21		168		307-1		276-2			
			22		756		264-1		277-3			
			23		340		248		쌍문동 36-10			
			24		456		264-3		삼 16			
			25		190		쌍문동 43-2		21-3			
			26		270		방학동 283-13		202-2			
			27		120		307-1		방학동 436-2			
			28		148		452		456			
			29		254		449		쌍문동 246			
			30		426		쌍문동 78-2		184			
			31		124		방학동 448		방학동 452			
				3	1	6m	158m	도봉동	1-11	도봉동	15-1	
					2		110		15-1		10	
					3		1280		8		62-8	
					4		270		368		362	
					5		2210		1-1		85	
					6		390		86		62-7	
					7		172		367-1		372	
	8		416			375		289				
		9		612		378		287-4				

구분	동명	구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소로	3	10	6m	40m	도봉동 352-18	도봉동 342-1	
			11	84	341-13	342-1		
			12	304	333-2	384-5		
			13	286	289	266-3		
			14	400	방학동 산 40-3	방학동 307-1		
			15	482	318-1	283-17		
			16	312	산 52-1	산 36		
			17	260	318-2	304-5		
			18	130	317	304-3		
			19	80	302	304-3		
			20	144	279-2	278-8		
			21	392	265	쌍문동 산 13-2		
			22	130	쌍문동 30	31-10		
			23	984	36-1	19		
			24	224	38-5	23-7		
			25	360	방학동 263-11	산 16		
			26	304	쌍문동 7	산 9		
			27	60	194-1	194-2		
			28	130	산 29-2	202-2		
			29	500	방학동 194-11	방학동 275-2		
			30	344	294-3	쌍문동 산 29-2		
			31	190	293	방학동 283-10		
			32	192	283-11	쌍문동 221		
			33	252	283-3	222-2		
			34	200	283-4	241-2		
			35	320	283-18	240-2		

구분	등급	구분	번호	곡원	면적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소토	소3	36	6 [㎡]	170 [㎡]	방학동	276-3	쌍문동산	71	
			37	"	64	"	280-1	방학동	280-1	
			38	"	62	"	281-3	"	283-12	
			39	"	176	"	444-3	"	447-1	
			40	"	93	"	444-20	"	443	
			41	"	130	"	445-6	"	446-1	
			42	"	164	"	275-1	"	쌍문동	243-3
			43	"	118	"	486-2	"	방학동	485-2
			44	"	284	"	458	"	493-2	
			45	"	274	"	460	"	492-3	
			46	"	158	"	477	"	472	
			47	"	260	"	500-4	"	493	
			48	"	106	"	484-3	"	483-2	
			49	"	394	"	쌍문동	45-19	쌍문동산	87
			50	"	292	"	67-5	"	56	
			51	"	280	"	67-2	"	187-1	
			52	"	130	"	70-2	"	69-2	
			53	"	366	"	산21	"	산87	
			54	"	334	"	187-1	"	쌍문동산	86
			55	"	98	"	산90	"	산86	
			56	"	156	"	창동	산10	창동	산17
57	"	124	"	297-4	"	304				
58	"	130	"	산11	"	산17				
59	"	215	"	17	"	701				
60	"	120	"	17	"	698				
61	"	226	"	687	"	70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면적	연장	기	점	중	점	비고
신설	소로	소 4	1	4	160	도봉동 1-11	도봉동 15-2			
			2	108	" 15-1	" 11				
			3	50	" 323-1	" 326				
			4	34	박학동산 53-1	박학동산 53-1				
			5	360	" 283-14	" 277-2				
			6	496	" 285-1	" 277-2				
		소 3	7	230	" 296	" 285-13				
			8	288	" 284-1	" 263-18				
			9	250	" 249	" 163-10				
			10	126	" 277-2	" 451				
			11	126	" 277-2	" 451				
			12	326	" 483-1	" 491-1				
			13	240	" 484-1	" 491-1				

◎서울특별시고시제 104 호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고속철도) 지적승인

1. 당시 관제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고속철도) 제 1호선 차고인입선 일부 구간에 대한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도시 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가. 지적승인조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국 도시 계획과와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8. 1.

서울특별시장

명칭	위치	폭(㎞)	연장(㎞)	비고
1호선인입선	동대문구 신설동 97-13 " 용두동 76-15	9.6 - 17.6	780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지하철 건설본부 및 동대문구청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제 105 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 1류 5호선 일부구간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같이 변경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출장소)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8. 1.

서울특별시장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점	광로	5	50 ^m	10,900 ^m	오간수교	상일동시계	광진교부문로폭 5m 축소
변경	"	5	25-50	10,900	"	"	백계토성부문 위치변경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출장소)에 보관

◎ 서울특별시고시제 106 호

도시계획시설(소로) 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구역중 홍제지구 도시계획시설(소로)를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가. 지구조서

설부고시제 123 호 (73.4.4)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8. 1.

서울특별시장

지구명	동명	비고
홍제지구	홍제동	

1. 서울도시계획도로확정조서별첨

2. 서울도시계획도로 확정도면 별첨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 구청에 보관함.

보 선 조 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 장	기 결	중 결	비 고
	소로	2	1	8m	159m	홍계동 280-2	홍계동 279-36	
	"	"	2	"	445	"	" 8-77	
	"	"	3	"	138	" 287-5	" 267-7	
	"	"	4	"	1,300	홍 계 교	" 361-32	
	"	"	5	"	338	홍계동 306-2	" 312-20	
	"	"	6	"	392	" 173-29	" 318-17	
	"	"	7	"	121	" 104-8	" 105	
	소로	3	1	6m	362	" 283-3	" 5-90	
	"	"	2	"	331	" 6-1	" 6-94	
	"	"	3	"	585	" 273-34	" 8-77	
	"	"	4	"	139	" 267-7	" 267-44	
	"	"	5	"	232	" 268-112	" 산 5-11	
	"	"	6	"	146	" 174-19	" 201-21	
	"	"	7	"	254	" 174-9	" 136-14	
	"	"	8	"	98	" 332-12	" 330-226	
	"	"	9	"	119	" 334-1	" 331	
	"	"	10	"	475	" 367-2	" 361-20	
	"	"	11	"	506	" 361-24	" 369-6	
	"	"	12	"	172	" 361-37	" 341-7	
	"	"	13	"	167	" 345-2	" 356-31	
	"	"	14	"	237	" 361-8	" 354	
	"	"	15	"	126	" 312-21	" 312-114	
	"	"	16	"	364	" 306-8	" 312-16	
	"	"	17	"	109	" 176-7	" 136-3	
	"	"	18	"	163	" 187-25	" 130-3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7 호

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철도)
사업실시계획인가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도시고속철도) 제1호선 차고 인입선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5조 및 제 26 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73 4.4)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지하철본부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74. 8. 1.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시행지 : 동대문구청앞-정
능천

2.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고속철도
제1호선 차고
인입선

3.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장

4.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1) 착수 : 실시 계획인가일로부터
7일 이내

2) 준공 : 75.12.30

5. 재 원 : 계, 1,722,800,000 원

1) 토목공사 : 1,600,000,000 원

2) 궤도연장공사 :

115,000,000 원

3) 전기공사 : 7,800,000 원

6. 인 가 내 용

구분	명 칭	위 치	폭 (m)	연장(m)	면적(㎡)	비 고
	지하고속철도	동대문구청앞-정능천	9.6 - 17.6	780	-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지하철본부, 동대문구청에 보관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47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제정자금
운용요강중개정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제정자금
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
한다.

1974.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제정자금
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금의 회전대출) 대출이 외
하여 회수된 자금 범위내에서 회전대
출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요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2. 이 요강은 시행이전에 이미 대출
된 자금은 이 요강에 의하여 대출
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48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산업화, 전문
제열화, 기업합병및시설근대화지
원자금집행요령중개정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31호(74.2.22)로
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산업화, 전문제열화, 기업합병 및
시설근대화 지원자금 집행요령중 나옴
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산업화, 전
문제열화, 기업합병 및 시설근대화 지
원자금 집행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중 2 용자대상업종 및 품목의
시설근대화 지원자금한 다 를 다음
과 같이 한다.

다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필하
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
된 협동조합가입자, 다만 해당 업종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신규발주업체는 시설완료
와 동시에 공장등록 및 협동조합 가
입이형각서 제출자로 하고 섬유류제품
생산자중 상공부장관이 정한 섬유시설

등록요령(상공부공고 제6238호. 71. 1.6)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 자는 등록요령에 의거 등록을 필한 자라야 한다.

별표 2 중 3 지원적격요건의 시설근대화 지원자금란 「가」호 및 「나」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서울특별시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및 동 지정을 받지 아니한 제조업체중 노후시설(건물 및 기계)의 개체,보완 및 시설의 확장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

- (1) 새로운 시설투자에 의하여 생산규모를 적정화 하려는 업체
- (2) 노후시설의 개체에 의하여 생산성의 향상,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이 기대되는 업체
- (3) 시설투자 적정화에 의하여 수출

의 획기적인 증대 또는 새로운 수출 및 전환이 가능한 업체나, 신규반주업체로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건물 및 기계)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업체

부 칙

이 요령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49 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및지정취소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3

조, 동 제 4 조 및 동 제 6 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지정업체와 지정취소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 29

서울특별시장

1. 지정 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1031	한국종합물산(주)	장강재	성북구상계동 1107-3	엘 법
502	주식회사소니	김광중	성북구적관동 341-15	완구
303	산동제약사	장용택	동대문구면목동 358-1	인삼차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602	삼탈섬유(주)	신오균	서대문구연희동374-4	염색가공
1513	경기산업(주)	이명식	영등포구동촌동158-2	양말
914	태양모직공업(주)	현익균	영등포구문래동6가34	남모직
1519	광명뚝판인쇄(주)	이학수	영등포구동촌동158	인쇄물
1527	신영전자공업(주)	조재두	영등포구염창동192	시리콘, 다이오드
1528	삼신유리기업사	이영규	영등포구동촌동296-2	가정용 유리제품
609	아미전기(주)	김성원	서대문구홍제동279-94	스트레오 라디오카세트
918	한국상역공사	장경환	영등포구오류동77	제털이, 식기
1124	오오상사	탁한구	관악구봉천동48-28 성동구신당동289-71	목제완구 목제인형

2. 지정 취소업체

지정번호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품명	취소사유
512	해창공업사	김치만	성북구정릉동383-41	예타	행정적시불이행
519	이생산업(주)	이원훈	성북구장위동76	가말	대기업으로전환
506	대건진흥(주)	변경기	성북구하월곡동90	직물나염	"
503	성일산업(주)	성일기	성북구하월곡동88-44	자수직물	"
514	백복메리아쓰공업사	김의명	성북구하월곡동4-6	메리아스	"
524	조광피혁	이영근	성북구하월곡동90-40	피혁	"
529	삼미섬유	김동호	성북구하월곡동90	봉제품	"
308	경안섬유공업(주)	김화용	동대문구회경동281	메리아스	"
301	한성실업(주)	김용순	동대문구답십리동384	직물와이아스	"
309	대선편물공업(주)	강용수	동대문구답십리동464	예타	"
319	취안산업(주)	박만규	동대문구면목동1049-695	예타	"
1020	빅토리아엘범(주)	이철수	도봉구상계동1107-3	엘범	폐업
627	공창물산(주)	손정수	서대문구불광동310-222	적, 불품	대기업으로전환

◎ 서울특별시 공고제 150호

서울특별시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
업체대체지정및 변경공고

당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
체의 기업체명과 소재지 변경 및 대

1. 대체지정

표자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생산 지정업체 지정 및 자금지
원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한다.

1974. 7.29

서울특별시장

지정취소					대체지정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929	도진산업사	영등포구천왕동246-4	박병호	쉐타	929	도진통상(주)	영등포구천왕동246-4	박병기	쉐타

2. 변경지정

변경전					변경후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지정번호	기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수출품명
1525	대영화학공업(주)	영등포구목동191-40	고광용	합성수지제품	1525	대영화학공업(주)	영등포구목동191-40	박경패	합성수지제품
902	동양식품상사	관악구대방동304-64	정영삼	화입해태	919	동양식품상사	영등포구문래동4가4	정영삼	화입해태

◎ 서울특별시 공고제 151호

미수검 증기검사최고및등록
취소(예고)공고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증기의 소유자
로서 소정의 증기검사를 기한내에 받
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사받을 것을 최고하고 계속 미필자
에 대하여는 해당 증기의 등록을 취
소하겠기 이에 공고합니다.

1974. 7.30

서울특별시장

1. 검사 요령

가. 검사 대상

- 신규등록검사 ○ 계속검사

나. 검사기한 ; 74.8.31

다. 검사장소 ; 현재 중기의 사용지물
관할하는 중기검사관청

라. 근거법규

- 중기관리법 제 12 조
- 중기검사규정 제 6 조 및 제 7 조

2. 만약 위 기간내에 검사물 받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하여는 중기관리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3. 저당 또는 압류 등록된 중기가
위 기간내에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기 관리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4. 해당 중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는 중기관리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별통지할
것이나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는 자
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53 호

주택개발을위한서빙고제 1. 고책,
북아현제 2 구역및아현제 2 구역
1차환지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45 호 (74.5.13) 로
사업실시인가된 서빙고 1. 고책, 북아
현제 2 구역 및 아현제 2 구역 1차환
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 86
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및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물
주택구 개량 2 파에 비치하여 공고일
로부터 14 일간 사업지구내 토지소
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으며

2. 본 공고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개
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1974.7.30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55 호

환지계획 (일부변경) 공람공고

1. 역촌, 경인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일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
경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47

조, 제 55조 및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1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3. 서류송달은 별도 환지계획변경에 관련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것이나 수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변경조서 ; 별첨
첨부 ; 관계도면 (생략)

1974.8.1

서울특별시장

사 명

◎ 1974.7.29

회 제 과 지방행정 서보경
주 사 보
지방행정 주사에 주서함

◎ 1974.8.1

심상건
지방행정서기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성동구군무를 명함.

한대인

지방건축기사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마포구군무를 명함.

시민회관장 이 사 관

안찬희

서울특별시군무를 명함.

구의수원지 지방토목 사 무 소 기 원

김중열

죽도수원지사무소 파견 (74.9.

20까지)군무를 명함.

성 동 구 지방기계 사 무 소 기 원

박주남

청소 2 과 파견 (74.11.30까지)

군무를 명함.

부 너 과 지방행정 사 무 소 기 원

조성배

사정개발담당관실군무를 명함.

중 로 구 지방행정 주사보시보

신연희

부너과군무를 명함.

아 동 병 원 (임상병리) 지방보건 사 무 소 기 원

배용중

서대문병원파견군무를 명함.

영등포병원 (입상환자) 지방보건기원보시보	조인봉	도봉구 지방행정사무소	공용철
아동병원과 견군무를 명함.		남부축지사업소군무를 명함.	
성동구 지방농림사	김용태	영등출장소 지방농림사보	김적상
서대문구농지과장 직무대리를 명함.		관악구군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시민봉사실 서기보시보	문중래		
공무원교육원과견군무를 명함.		◎ 1974.8.5	
농지과 농림기사	박용복	경북대구시 지방행정동사무소 서기보	허현암
지방농림기사에 입함.		서울특별시진인을 명함.	
2호봉을 급함.		지방행정서기보에 입함.	
서대문구군무를 명함.		5호봉을 급함.	
남부축지사업소 지방농림사	양상옥	용산구군무를 명함.	
도봉구군무를 명함.			김영세
북악공원관리사무소 지방농림사	조두환	지방행정주사보시보에 입함.	
마포구군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성북구 지방농림사	오임규	양서출장소 군무를 명함.	
중구군무를 명함.			김호섭
서대문구 지방농림사	윤증덕	지방토목기사보시보에 입함.	
양서출장소군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지방농림사	국응실	마포구수도사업소군무를 명함.	
은영출장소군무를 명함.			김국환
마포구 지방농림사	이수원	지방보건기원보시보에 입함.	
북악공원관리사무소군무를 명함.		1호봉을 급함.	
은영출장소 지방농림사	유금중	정신병원군무를 명함.	
영등포구군무를 명함.			

<p>신영애</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동부병원 근무를 명함.</p>	<p>김숙형</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군무를 명함.</p>
<p>박춘심</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조육화</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이미애</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양순주</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정신병원 근무를 명함.</p>
<p>고영순</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p>	<p>이종선</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p>
<p>나경숙</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박주오</p> <p>영동출장소 지방토목 기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p>
<p>노명순</p> <p>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입함. 1호봉을 급함. 서대문병원 근무를 명함.</p>	<p>안근필</p> <p>한강건설사업소 지방토목 기 영동출장소 근무를 명함.</p> <p>김영세</p> <p>도 시 지방토목 가스사업소 기 사 보 성북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신기준</p> <p>도봉구보건소 지방의무 장 직무대리 기 과 지방의무기정예 입함.</p>

2호봉을 급함.

도봉구보건소장에 명함.

성동구보건소 지방외무
장 작무래라 기 과

지방외무거정에 임함.

2호봉을 급함.

성동구보건소장에 명함.

◎ 1974.8.10

강 원 도 지방간호 박 달 봉
삼척군보건소 기원보시보

박인섭

서울특별시귀입을 명함.

지방간호기원보시보에 임함.

1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근무를 명함.

서 울 특 별 시